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1.07.09.>

검 사 성 적 서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03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6000818

페이지 : (1)/(총 6)

1. 신 청 인 ☑ 원 본 ☐ 재발급
   - ○ 업체명 :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(주) 성남지점
   - ○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49 (상대원동)
   - ○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2600027호, 2026. 05. 28.
2. 검사성적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3. 검사대상 종별(품명) :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
4. 검사기간 : 2026. 05. 28. ~ 2026. 07. 29.
5. 검사방법 : 소방청고시 제2024-31호(2024. 07. 08.)
6. 검사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7. 검사환경
   - ○ 온 도 : (25.6 ± 2.9) ℃, 상대습도 : (53 ± 6) % R.H.
8. 검사결과 : 합격
   - ※ 첨부 : 세부 형식시험 결과(2 ~ 6 페이지 참조)

확 인	실 무 자	기 술 책 임 자
	성 명 : 김 희 승 (서명)	성 명 : 안 명 신 (서명)

위 성적서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.

2026년 07월 29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(인)

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으며, KS Q ISO/IEC 17020 및 KOLAS 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.
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
3. 이 성적서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(상기 전화번호 참조)에게 연락바랍니다.

사본 COPY

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03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6008l8

형식시험 결과

업체명	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 코리아(주) 성남지점	형식승인번호	감25-11-1
품 명	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	형 식	DC 30 V, 아날로그식, 보통형, 재용형, 주소형, 공칭감지농도범위(3 %/m ~ 15 %/m)

시험항목			기준	결과			비고
조 항	항 목			시료(개)	검사결과	판 정	
제5조	구조 및 기능	구조검사	작동이 확실하고, 취급·점검이 쉬워야 하는 등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	1	적 합	합 격	
		난연성능 시 험	UL 94 규정에 의한 V-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을 것	1	시험생략	합 격	*
		외함의 열변형	기준에서 정한 환경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, 변형이 없을 것	1	시험생략	합 격	*
		기류방향성	기류의 방향에 따라 그 기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을 것	2	적 합	합 격	
		경사기능 시 험	정위치로부터 45° 를 경사시킨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1	적 합	합 격	
제5조의2	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일반기능		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 등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1	해당없음	–	
제5조의4	무선식 감지기의 기능	단독경보형의 무선기능	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는 등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최대 연동개수	해당없음	–	
		무선식 감지기의 기능		1	해당없음	–	
제5조의5	화재알림형 감지기의 일반기능		작동되는 경우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 등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1	해당없음	–	
제6조	부품의 구조 및 기능	스위치	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는 등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	1	해당없음	–	
		표시등	주변조도가 (500 ± 25) lx인 조건에서 6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되어야 하는 등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	1	시험생략	합 격	*
		퓨즈	과전류보호장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	1	해당없음	–	
		음향장치	1 m 떨어진 지점에서 85 dB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기술기준에 적합 할 것	1	해당없음	–	

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03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6000818

형식시험 결과

업체명	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 코리아(주) 성남지점	형식승인번호	감25-11-1
품 명	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	형 식	DC 30 V, 아날로그식, 보통형, 재용형, 주소형, 공칭감지농도범위(3 %/m ~ 15 %/m)

시험항목				결과			비고
조 항	항 목		기 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 정	
제7조	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		정격전압의 ±20 % 범위 또는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의 하한값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2	해당없음	–	
제8조	비화재보 방지	급격한 상대습도 변화	(23 ± 2) ℃ 및 상대습도 (20 ± 5) %에서 (90 ± 5) %인 상태로 급격하게 3회 변경 투입을 반복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		공급전원 순간차단 반복	분당 6회의 비율로 순간적인 공급전원의 차단을 반복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		광장해시험	백열램프, 크세논램프에 노출되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		기류장해 시 험	(5 ± 0.5) m/s의 풍속 기류를 가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		풍속변화 시 험	0 m/s와 (1.5 ± 0.2) m/s 사이의 풍속변화 등 기류를 가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		주위온도 변화시험	주위온도 -(20 ± 2) ℃ 및 (70 ± 2) ℃의 온도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		기압변동 시 험	(760 ± 30) mmHg의 기압 조건에서 (50.8 ± 2) mmHg의 기압 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		형광램프 노출시험	형광램프에 노출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		할로겐램프 노출시험	할로겐램프에 노출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		태양광 노출시험	직사 및 반사된 태양광에 노출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		아크용접 불꽃 노출시험	아크용접 불꽃에 노출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		충격파 전압시험	충격파전압이 인가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		기타 외광 노출시험	그 밖의 외광에 노출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		주황색의 천	흔들리는 주황색의 천에 노출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
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03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6008I8

형식시험 결과

업체명	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 코리아(주) 성남지점	형식승인번호	감25-11-1
품 명	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	형 식	DC 30 V, 아날로그식, 보통형, 재용형, 주소형, 공칭감지농도범위(3 %/m ~ 15 %/m)

시험항목			결과			비고
조 항	항 목	기 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 정	
제8조의2	전자파적합성	「전파법」 제47조의3제1항 및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67조의2에 따라 「전자파적합성 기준」에 적합할 것	1	시험생략	합 격	* *
제9조	부속장치	부속장치는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제11조	주위온도시험	기준에서 정한 환경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,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2	적 합	합 격	
제13조	감지기의 인장시험 등	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,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제16조의2	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	기준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, 작동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	12	해당없음	–	
제18조의2	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	기준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, 작동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	12	해당없음	–	
제19조	광전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, 공칭감시거리,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	기준에서 정한 감도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,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할 것	12	화재정보신호값 (%/m) 2.3 ~ 15.6 작동시험 (초) 7 ~ 14	합 격	- 화재정보값 허용오차범위: 1.00 %/m ~ 18.3 %/m - 작동시간: 30초 이내
제19조의2	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	기준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, 작동 범위 내에서 작동할 것	12	해당없음	–	
제25조	노화시험	기준에서 정한 환경조건에 따라 30일간 방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제26조	방수시험	방수형의 감지기는 (23 ± 2) ℃, 상대습도 (50 ± 2) %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 (23 ± 2) ℃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 후 이상이 없을 것	2	해당없음	–	

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03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6008I8

형식시험 결과

업체명	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 코리아(주) 성남지점	형식승인번호	감25-11-1
품 명	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	형 식	DC 30 V, 아날로그식, 보통형, 재용형, 주소형, 공칭감지농도범위(3 %/m ~ 15 %/m)

시험 항목			결과			비고
조 항	항 목	기 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 정	
제26조의2	살수시험	옥내·옥외형 및 도로형 불꽃감지기는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서 물을 분사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제27조	내식시험	기준에 정한 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, 감도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제28조	반복시험	조작을 6 000회 반복할 경우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제29조	진동시험	통전 및 무통전 상태에서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진동을 가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제30조	충격시험	통전상태에서 무게 0.54 kg의 강철구로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제31조	분진시험	기준에서 정한 조건에서 15분간 교반 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제32조	충격전압시험	기준에서 정한 조건에서 충격전압을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제32조의2	광원감시시험	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시험한 후 고장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발신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2	적 합	합 격	
제32조의3	자동보정시험	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시험한 결과,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을 자동적으로 보정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2	해당없음	–	

KFI 한국소방산업기술원
Korea Fire Institute
1708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03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26000818

형식시험 결과

업체명	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 코리아(주) 성남지점	형식승인번호	감25-11-1
품 명	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	형 식	DC 30 V, 아날로그식, 보통형, 재용형, 주소형, 공칭감지농도범위(3 %/m ~ 15 %/m)

시험항목				결과			비고
조 항	항 목		기 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 정	
제33조	습도시험		(40 ± 2) ℃ 및 상대습도 (93 ± 3) %의 조건에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2	적 합	합 격	
제34조	재용성시험		(150 ± 2) ℃, 풍속 1 m/s인 기류를 가하는 시험 후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2	해당없음	-	
제35조	절연저항시험		절연된 단자 간 등 기준에서 정한 부위의 절연저항은 50 MΩ 이상 일 것	2	적 합	합 격	
제36조	절연내력시험		단자와 외함 간의 절연내력시험에 1분간 견딜 것	2	적 합	합 격	
제37조	표시		기준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것	2	적 합	합 격	
제37조의2	표시 내구성 시험	표시침지 시험	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한 후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, 식별이 가능할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		표시내열 시험	(80 ± 2) ℃의 공기중에 10일 동안 방치한 후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, 식별이 가능할 것	2	시험생략	합 격	*

1. "*" 표시는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2항,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」 제10조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.
2. "**" 표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제출로 인한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.

"끝"

복사본 COPY